2021년도 제11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o 일 시: 2021. 5. 12.(수요일), 10:30
- o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o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최승수(분과위원장), 김경숙, 박성호 위원
- 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분과위원장
2. 안건상정분과위원장
〈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강나래 전문위원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3. 폐회선언분과위원장

Ⅱ.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042건(안건번호 제2021-489 30호~49573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1-48930호~48940호(순번 1번~11번)는 네이 버 블로그에서 다수의 일본 영상물을 제공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가결함. 단, 안건번호 제2021-48935호(순번 6번)는 현재 게시물이 삭제되어 경고의 시정경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1-48941호~48970호(순번 12번~41번)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만화, 영화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1-48971호(순번 42번)는 네이버 블로거가 직접 작성한 글 등과 함께 음악저작물을 각 스트리밍 형식과 다운로드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의 내용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으나, 게시자의 창작성이 발현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현재 mp3 파일이 이미 삭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1-49571호~49573호(순번 642번~644번)는 네이버 밴드에서 최신 영화를 제공한 사안으로, 해당 영화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992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o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 5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URL 정보 총 580개의 URL 정보에 관한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 (안건번호 제2020-3523호~4102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5개에 접속할 수 있는 580개의 URL 정보에 관해 검색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o 최승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110회 저작권보호심 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안건상정

-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강나래 전문위원: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A, B, C 위원: 해당 없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강나래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30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1,042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특히 법리에 관해서는 검토보고서의 하급심 판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람.
 -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11번은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네이버 블로그 이용자들이 다수의 일본 애니

메이션을 각 스트리밍으로 제공한 사안임. 총 25개 게시물임.

(순번 1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해당 저작물의 972화 전체 분량을 우리말 자막과 함께 제공하고 있음.

(순번 4번 채증 자료를 제시하면)해당 저작물의 5화 전체 분량을 우리말 자막과 함께 제공하였으나,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현재 비공개 글로 전환된 상태임.

(순번 6번 채증 자료를 제시하면)해당 저작물의 33화 전체 분량을 제공하였으나,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현재 게시물이 삭제된 상태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함. 순번 일부의 경우 2021. 5. 6. 현재 비공개 글로 전환되어 있으나, 이웃공개, 서로이웃공개 등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을 것이 예상되고, 언제든지 공개로 전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될 수 있으므로 공개 게시물과 동일하게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단, 순번 6번은 현재 이미 삭제되었으므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C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가결 의견임. 단 순번 6번은 게시물이 이미 삭제되었으므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B, A 위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11번은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단, 순번 6번은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2 번~41번은 2명의 실명 민원인, 1명의 익명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웹하드 사이트에서 다수의 만화와 영화 불법복제물을 무료 내지 130 포인트에 제공한 사안임. 총 31개 게시물임.

(순번 12번 채증 자료를 제시하면서)해당 저작물의 12권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 서점 등에서 단행본은 4,500원, 전자책은 2,700원에 판매중임.

(순번 40번 채증 자료를 제시하면서)해당 저작물의 1화~44-2화를 50 포인트에 판매하고 있으며, 인터넷 서점 등에서 단행본은 6,300원, 전자책은 3,150원에 판매중임. 게시물 이미지 내에 "♬♬ ♬♬ ♬♬ ♬♬♬♬#라는 워터마크가 포함되어 있어, 불법사이트에서 다운로 드하여 재업로드한 것으로 보여짐.

(순번 41번 채증 자료를 제시하면서)해당 저작물의 전체 분량을 130 포인트에 판매하고 있으며, 현재 일부 극장 상영 중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B, A, C 위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시정조치를 권고할 필요 성이 인정되므로 시정권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2번~41번은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42 번은 보호원이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네이버 이용자 가 대중가요 '♬♬♬ ♬♬(♬♬: ♬♬♬ ♬♬)', '♬♬♬♬ ♬♬(♬♬: ♬♬♬♬)'의 전체 분량을 스트리밍 형식으로 전송하면서, 음악 '♬ ♬♬ ♬♬'의 mp3 파일 및 직접 촬영한 사진과 라디오 대본 형식의 글을 함께 게시한 사안임. 총 1개 게시물임.

(순번 42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먼저 각음악저작물 스트리밍 부분의 경우 유튜브 임베디드 링크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당 URL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유튜브에 게시된 원천게시물의 게시자가 저작권 정보를 표시하고 있으며, 유튜브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음악저작물의 이용에 대하여 권리자에게 저작권료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보여짐. 심의대상 게시물 상,하단에는 게시자 직접 작성한 글과 직접 촬영한 사진도 함께 게시하고 있음.

(순번 42번 채증 자료를 제시하면서)보호원 온라인보호부에서 심의 대상 게시물 채증 시 음악 '♬♬♬ ♬♬'의 mp3 파일이 게시되어 있 었으나, (심의대상 게시물에 다시 접속하여 보여주면서)현재 삭제된 상태임. mp3 파일 제공 부분의 경우, 음악저작물을 권한 없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저작권자인 작곡가와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전송권 등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할 것임.

심의대상 게시물의 내용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으나, 현재 mp3 파일이 이미 삭제된 점, 게시자의 창작성이 발현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러한 게시물 전체에 대하여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권고가 이루어질 경우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게시자에 대한 저작권법 준수 안내의 목적으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A 위원: 게시자 본인의 경험을 회고하는 글과 사진 등이 게시된 것으로 보아 지극히 사적인 게시물로 보임. 본 안건의 쟁점 사안인 mp3 파일은 현재 삭제되었으므로, 현재 심의대상 게시물에는 저작권 침해의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C 위원: 해당 블로그의 다른 게시물을 보여 주시기 바람.
- 강나래 전문위원: ('♬♬♬♬ ♬♬♬' 게시판에 접속하여 보여주면서)

해당 블로그의 다른 게시물에는 심의대상 게시물과 유사하게, 게시자가 직접 찍은 사진과 글, mp3 파일, 유튜브 임베디드 링크 등이게시되어 있음. (해당 블로그에 게시된 대중가요 '♬♬ ♬♬♬'의 스트리밍을 재생하여 들려주면서)게시자는 해당 음원의 전체 분량을 스트리밍 형식으로 전송하고 있으며, (mp3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들려주면서)mp3 파일 역시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는 상태임.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 게시된 mp3 파일은 삭제되었으나, 해당 블로그의 다른 게시물을 통하여 게시자가 반복적으로 대량의 불법복 제물을 게시한 것을 확인하였음. 이에 과거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확립한 심의기준에 따라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하는 것이 타당함.
- C, B 위원: 이견 없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42번은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순번 43번~641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 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총 게시물 수는 992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만화, 게임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영화 '기생충'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60번은 모바일 웹하드에서 영화 '기생충'을 106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전체 분량인 약 2시간 11분을 스트리밍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네이버 시리즈

ON에서 6,050원에 구매, 1,540원에 대여 가능함.

(방송 '어쩌다 가족'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362번은 모바일 웹하드에서 방송 '어쩌다 가족'을 62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2021. 5. 2.에 방영한 7화 전체 분량인 약 56분을 스트리밍으로 제공함. TV조선에서 2021. 3. 21.부터 현재까지 총 8화 방영중이며, 네이버 시리즈 ON에서 11,550원에 구매, 1,650원에 대여 가능함.

(음악 'Peaches'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585번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음악 'Peaches'를 8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제공하고 있는 음원 101곡 중 1곡이며, 2021. 3. 19.에 발매한 미국 POP 음악임. 2021. 5. 11. 기준 멜론 사이트 음원 차트 순위 2위이며, 멜론, 네이버 바이브(VIBE) 등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 에서 멤버십 유료 가입 후 무제한으로 듣기 가능함.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642번~644번은 보호 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긴급대응저작물에 대한 신속심의를 요 청한 사안임. 심의일 기준 오전 9시까지 심의 요청된 총 3개 게시물 을 추가하여 보고 드리겠음.

(순번 642번 채증 자료를 제시하면서)네이버 밴드에서 해당 저작물의 전체 분량을 mp4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순번 644번 채증 자료를 제시하면서)네이버 밴드에서 해당 저작물의 전체 분량을 mp4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C, B, A 위원: 순번 43번~644번은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특별한 쟁점 없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43번~644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 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 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1-48935호(순번 6번), 제2021-48971호(순번 42번)는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하고, 안건번호 제2021-48930호~48934호(순번 1번~5번), 제2021-48936호~48970호(순번 7번~41번), 제2021-48972호~49573호(순번 43번~644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o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제2호 안건에 관한 회의록은 11쪽부터 15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제 제2020-3523호~4102호(순번 1~580번)의 구글 검색 결과 제한을 가결함"

3. 폐회 선언

o 최승수 분과위원장이 제11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1년 제11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5. 20.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김경숙

위원 박성호